

별도협약서

제1조(준용) 인천적십자병원과 인천적십자기관노동조합 대표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며, 본 별도협약서는 보충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

제2조(응급실 및 병동 운영 외부용역) ① 인천적십자병원은 응급실 및 병동에 근무하는 원무당직인력과 이송요원인력 등에 대해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일로부터 2년간 외부용역을 사용할 수 있다.

② 연장여부는 외부용역에 대한 평가 후 노·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.

제3조(식사제공) ① 토·일·공휴일을 제외한 매월 실 근로일수에 10식은 기본식사(식권)로 제공하며, 잔여일수의 식비는 1식당 금7,000원으로 식수정산(휴가, 출장, 교육, 특근 등 제외)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.(기본식사(10식)은 금7,000원에서 식당 지급단가(금6,000원)를 공제하고 잔여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직원에게 지급한다.)

② 병원은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식사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 식비로 지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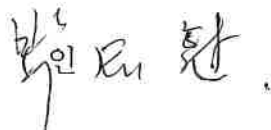
제4조(야간근무 간식비) 간호팀 3교대 근무직원 중 저녁근무, 야간근무 직원과 총무팀 기관실, 진단검사의학과, 영상의학과 야간근무 직원은 야간 간식으로 실 근로일수에 금4,000원 이내의 현물을 지급한다.

2022. 09. 29.

사 측

인천적십자병원

원 장 박 태 환



노 측

인천적십자기관노동조합

위 원 장 신 강택

